

定 款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정관

제정 2007.12.21.
개정 2009.03.12.
개정 2011.03.01.
개정 2012.02.01.
개정 2023.10.23.
개정 2024.0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공헌하고 회원의 전문성을 개발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활동과 권익옹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Worldwide Coaching Network“라 하고 약칭은 WCN Korea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코칭과 NLP의 학습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회원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코칭과 NLP 관련 분야 교재, 도서 및 홍보물 등 발행

②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코칭과 NLP관련 민간자격증 발행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구분) ① 개인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후원회원 -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회원

② 단체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기관 - 협회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이 법인에 가입한 기관
2. 제휴기관 - 협회와 상호 필요에 의해 협력 및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한 기관
3. 후원기관 - 협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 중이거나 서류 상 후원을 약속한 기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협회의 이사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총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이며,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이메일, SNS로써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3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근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설치)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0조(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①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직원은 유급으로 하되 그 급여액과 지급 방법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처무규정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2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